

2025 국가직 9급 대비 개정법령(12개)

■ 개정법령 공부에 대하여

- ① 개정법령 출제기준(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中):
※ 시험일 전전달 말일 → 예> 시험일이 2024. 3. 23.인 경우, 출제기준은 2024. 1. 31.이 됨
- ② 각 법령에서 ‘내용’칸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 ③ ★: 해당 표시가 있는 법령은 중요한 개정사항입니다.

■ 2025 국가직 대비 개정법령: 2024년 7월-2025년 2월 시행법령 중 주요 법령 검토

구분	개정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대한석탄공사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②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③ 참고: 위에 나열된 공공기관은 기출이력이 없는 내용이니 참고만 할 것																
국가회계법 ★	내용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함															
	법령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내용	경력과 연공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하도록 함															
	법령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	내용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령	<table><tr><th>구분</th><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선물</td><td>5만 원</td><td>5만 원</td></tr><tr><td>축의금·조의금</td><td>5만 원</td><td>5만 원</td></tr><tr><td>음식물</td><td>3만 원</td><td>5만 원</td></tr><tr><td>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td><td>10만 원</td><td>15만 원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td></tr></tabl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선물	5만 원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5만 원	음식물	3만 원	5만 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10만 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선물		5만 원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5만 원													
	음식물		3만 원	5만 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10만 원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지방세 기본법	내용	아래의 조항 참고 → 지방세 암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됨															
	법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군세를 해당 시·군의 시·군세로 한다.															

구분	개정사항	
지방교부세법 ★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분야에 교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분야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령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지방 공무원법	내용	아래의 조항 참고
	법령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법령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u>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구분	개정사항	
국가·지방 공무원법	내용 ★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u>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u>
	법령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u>임용결격 사유 각 호에서 제1호 제외</u>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내용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법령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⑤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가. <u>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u> 나. <u>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u>
	내용	아래의 조항 참고
	법령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u>직권휴직</u>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u>청원휴직</u>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u>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 → <u>만 8세×</u>

구분	개정사항	
고향사랑기부금법	내용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 법인×</u>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③ <u>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u>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u>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u>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